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2011년 2월 15일
- 다. 상정일자: 2011년 2월 23일 , 원안가결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제1항 및 별표3과 관련, 학원의 시설규모에서 보습학원에 재학생만 받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가. 주요내용**

-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함  
(안 제3조의4제1항 및 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분야와 계열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8조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 시설기준에 대해서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교습대상”에 대하여는 조례에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 동 조례 제3조의4 제1항 「별표3」에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 교습”으로 정의하여 보습학원의 수강생 자격을 재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동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36141, 2010.7.16.)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0.7.30. 조례로 교습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동 조례의 개정을 권고한 상태임.
- 따라서 법원의 판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 및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만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가.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나.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제3조의4제1항 관련)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 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480㎡ 이상	
			보습(보통교과목 보완교습)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4와 같음	
기 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 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7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영제3조의2 별표1참조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 사무·관리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주산,속셈,속독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비독, 웅변	별표4와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제3조의4 제1항 관련)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제3조의4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수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종류	분야	계열	교수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	660㎡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	660㎡ 이상			
			검정고시	480㎡ 이상					검정고시	480㎡ 이상			
			보습(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교습)	70㎡ 이상					보습(보통교과목 보완교습)	7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5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5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4와 같음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70㎡ 이상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7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직업기술	산업기초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영제3조의2 별표1참조	별표4와 같음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직업기술	산업기초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영제3조의2 별표1참조	별표4와 같음		
			경영사무원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주산, 속셈, 속독	70㎡ 이상				경영사무원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주산, 속셈, 속독	7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옹변				별표4와 같음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옹변	별표4와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비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과정을 말한다.						※비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과정을 말한다.						